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행복한 한국생활
우리와 함께해요~

보건복지가족부

우리 함께 가요, 행복의 나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어와 풍습,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우시죠?
비록 태어난 곳은 달라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가족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안전한 거주_체류와 국적

05 외국인등록
06 체류기간 연장
07 영주자격 신청
08 귀화(국적취득)

2 다문화가족 지원

13 다문화가족지원법
14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1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17 결혼이민자가족 영농교육

3 임신 / 출산 / 양육

19 임신과 건강
20 희귀질환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
22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3 예방접종

4 자녀교육

25 한국의 교육제도/지역아동센터
26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5 여성과 건강

29 국민건강보험
30 의료급여제도
31 방문건강관리사업
32 무료진료

6 일과 직업훈련

35 취업
36 직업훈련
37 고용보험

7 생활보장

39 국민기초생활보장
40 자활근로
41 긴급지원
42 모자복지 지원

8 인권보호

4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46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속 전화번호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꼭 해야 할 절차입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한 인생을 가꾸는 제2의 고향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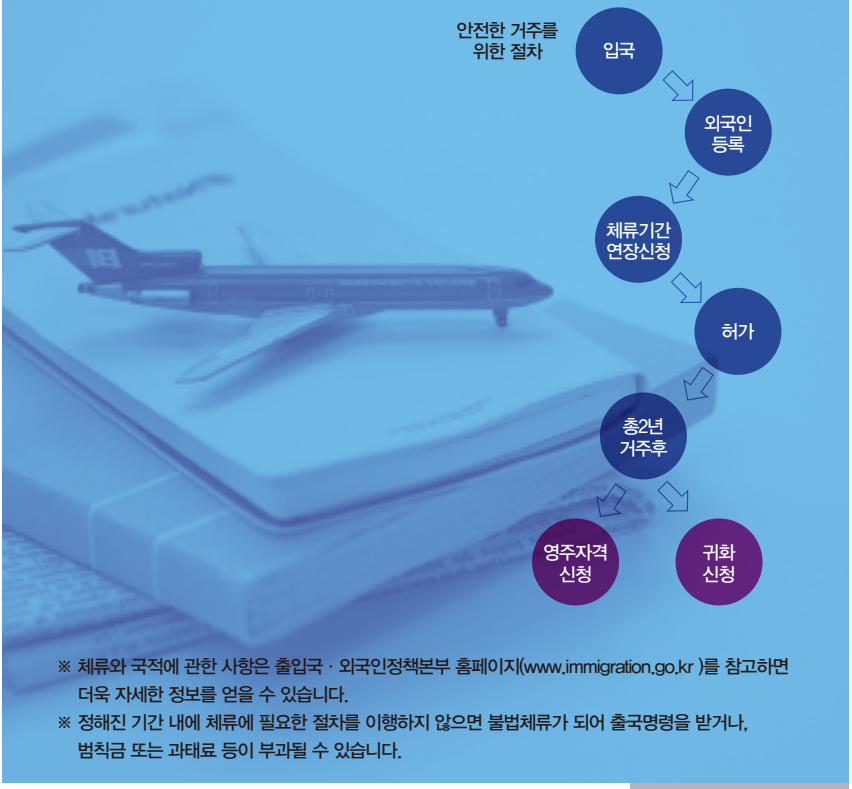

※ 체류와 국적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어 출국명령을 받거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1

입국 후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장기체류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언제

입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사진(3X4cm) 2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배우자 또는 자격이 있는 제3자, 공증불필요),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재발급

분실, 훼손, 기재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변경 등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시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구 외국인등록증 (분실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첨부),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1 체류기간 연장

계속 거주하려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함께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체류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연장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어디서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정부수입인지 2만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또는 별거,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 신청 1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한국생활이 더욱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았다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연장을 할 필요가 없고, 출국 후 1년 이내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신국가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국 체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체류자격부여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성),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이름이 있어야 함)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관련서류
(다음 중 1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 불필요),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또는 별거를 하게 되었을 경우,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배우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지 한국공관에서 배우자 자격을 다시 신청해 입국한 뒤 2년을 체류해야 영주자격부여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등은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1 귀화(국적취득)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십니까?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는 간이귀화를 신청,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가 직업이 있거나 자산을 소유해 생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요건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 또는 별거,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제출서류

[공통] 귀화허가신청서(사진(4 X 5cm)부착) 작성 후 첫 장 사본 / 여권사본 / 귀화진술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또는 이혼사실 등재) 및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유지 시) / 신원진술서 및 사본 / 재산관련서류(다음 중 1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만원)

[개인사유별 추가서류]

-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서(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및 법원판결문, 공인된 여성단체(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참고)확인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 남편 또는 남편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 양육사실입증서류 첨부

어디서

국적업무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취급합니다.

※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동행이 불가능할 때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국적업무 취급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02-2650-6212~4	서울시 경기도(안양 · 과천 · 성남 · 하남 · 광명시)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051-461-3000	부산 · 울산시, 경남(김해 · 양산 · 밀양시)
인천	인천시 중구 운서동 2172-1 032-740-7115	인천시, 경기(안산 · 부천 · 시흥 · 김포시)
수원	수원시 권선구 일월초동 2길 031-278-3316	경기도(군포 · 의왕 · 수원 · 용인 · 오산 · 이천 · 안성 · 화성 · 광주시, 양평 · 여주군)
제주	제주시 임항로 277 064-722-3494	제주도
대구	대구시 동구 안심로 117 053-980-3511	대구시, 경북
대전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042-254-8811~4	대전시, 충남
여수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7 061-689-5500	전남(여수 · 순천 · 광양시)
의정부	의정부시 신흥로 172 서영빌딩동관 031-828-9390	경기도(의정부 · 동두천 · 구리 · 고양 · 남양주 · 파주시, 양주 · 연천 · 포천 · 가평군)
광주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062-381-0015	광주시, 전남(여수 · 순천 · 광양시 제외)
마산	경남 마산시 해안로 260 055-222-9272~5	경남(김해 · 양산 · 밀양시 제외)
전주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1 063-245-6161	전북
춘천	춘천시 공지로 230 033-244-7351~3	강원도
청주	청주시 흥덕구 새터1길 23 043-236-4900~1	충북

1 귀화(국적취득) 절차

국적취득 절차

2년 이상 한국 거주 ➡ 귀화허가 신청 ➡ 면접 ➡ 귀화허가 ➡ 가족관계 등록 ➡ 외국국적 포기 ➡ 주민등록 ➡ 외국인등록증 반납

자격조사 및 면접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합니다.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 외국국적 포기,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 · 구청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는 귀화허가통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외국국적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외국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고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담당자에게 제출한 뒤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한국 내에 해당국가의 대사관이 없거나 본국의 관련법 상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이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 국적취득신고서, 귀화허가통지서사본,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서 외국이름을 한글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서등본을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우리 함께 웃으며 미래의 희망을 노래해요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희망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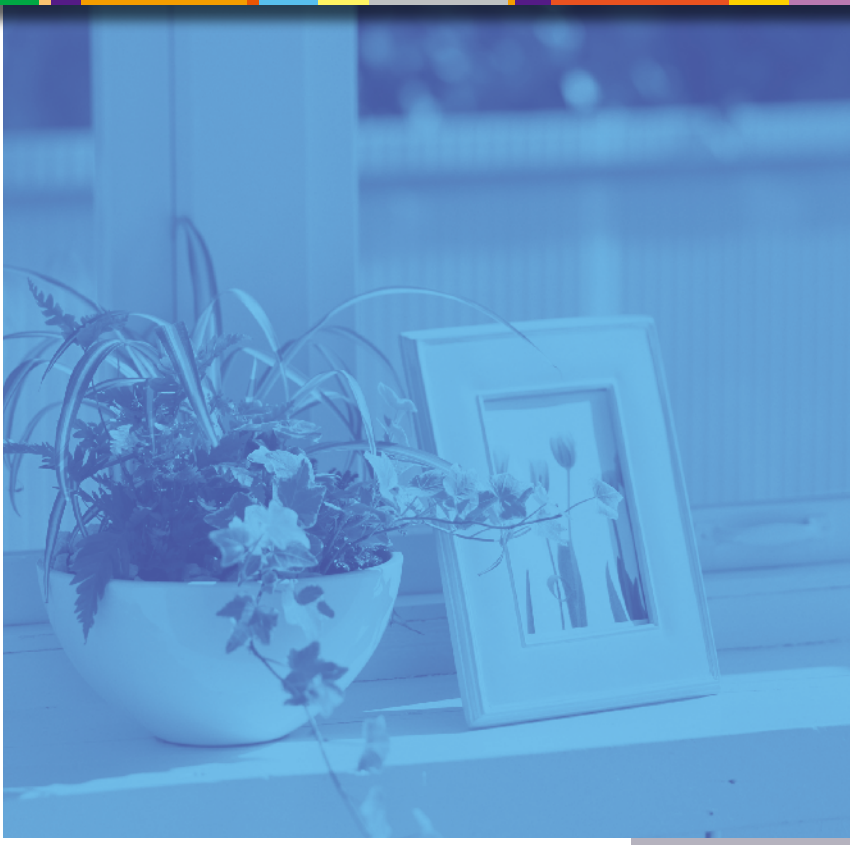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한국생활을 도울 것입니다.

응원 하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여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해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응원 둘,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원 셋,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응원 넷,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요

외국어통역서비스를 갖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고,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원 다섯,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도와드려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원 여섯,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을 지원해요

다문화가족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응원 일곱, 다국어서비스를 제공해요

다국어로 서비스를 제공,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응원 여덟,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해요

전국 8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사업

2

한국사회에 조기정착과 원만한 가족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만한 가족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각종 교육과 상담, 자녀양육지원, 출산전후 지원,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 한국어교육 : 기초 · 초급 · 중급 · 고급 등 수준별 한국어교육 • 가족교육 : 이민자 · 부부 · 시부모 · 자녀 · 예비부부 · 가족통합교육 • 문화교육 : 한국문화, 배우자국가문화, 생활정보, 문화적 차이 등 • 정보화교육 : 컴퓨터교실 • 직업교육 : 운전면허, 미용, 영농기술 교육 등
상담	• 개별(체류 · 경제 · 직업 · 인권 · 가정폭력 · 성폭력 등)상담 • 가족생활상담, 부부상담, 각종 치료상담
문화정서 지원	•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단위 자조모임결성 • 다문화가족캠프 개최 • 친정어머니(멘토)후원가족 매칭 • 한국문화체험행사 등
양육교육 지원	• 산전산후교육, 출산 · 육아 · 가사도우미지원 • 아이돌보미지원, 언어발달검사, 심리치료 • 학교생활적응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 • 다문화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 · 홍보, 다문화축제, 캠페인, 함께 하는 문화행사
역량강화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 · 번역사 양성, 전문상담원 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센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 이용문의 전국 어디서나 ☎ 1577-5432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tmfc.familynet.or.kr) 참조

한국어교육

- 집합교육 : 언어별 · 수준별 교육 실시
- 방문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 체결로 온라인교육

종합 생활정보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 레인보우플러스(Rainbow+) 연4회 발간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및 남편교육 · 상담 강화
- 결혼이민자 · 배우자 · 자녀 · 시부모 대상으로 문화이해, 가족관계증진교육

임신 · 출산 지원

출산 1~2개월 전 '찾아가는 임신 · 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아동의 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방문교육

창업 · 취업역량 강화 교육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기술 등 정보화교육
- 다문화강사 양성 : 지역내 보육시설 ·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 지원
- 원어민 외국어강사 양성 :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 활동 지원
- 통 · 번역사 등 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인력양성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결성지원 및 초기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멘토링
-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결혼이민자가족모니터링단 온라인카페(http://cafe.daum.net/tmfcenter)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행사 실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2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 · 출산 · 육아 또는 지리적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 부부, 부모자녀, 시부모 및 기타 가족관련 상담
- 한국생활 적응, 다문화 이해, 자녀양육 및 가정문제 등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역할 수행
- 취업 및 생활 정보제공, 관련 기관 이용방법 등 지원
-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 공공기관 등 연계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는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전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 및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족 및 친인척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 피임법, 임신, 출산, 육아정보 제공
- 다문화가정 문제예방 및 해결, 후속조치를 위한 기관 연계
- 실생활에 필요한 문화 및 생활, 영양, 건강, 교육, 관공서 등 정보 제공
- 부모의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지도 등을 위한 부모역할교육
- 한국생활문화 교육 및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방문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1577-5432

방문교육서비스는 무료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1577-5432)로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돼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

2

영농기술을 배워 희망의 씨앗을 뿌리세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촌적응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농촌생활에 필요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참가대상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자활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다문화가족과 교류를 희망하는 일반농가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 참가자는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장에서 집합교육과 소그룹 교육, 체험학습, 생활설계, 가족교육, 개별교육 등 총 10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역별 특화사업 교육도 받게 됩니다.

공통과목			
다문화가족과 농업정책, 한국의 농사문화, 농업인의 건강, 영농정보화교육, 농산물가공, 식량작물재배, 농기계활용 및 안전교육, 농촌가정의 가족교육, 농촌지역 자조집단 운영 및 멘토링			
지역	**특화사업**	**지역**	**특화사업**
강화	원예작물재배	**익산**	실용원예, 압화전문인력양성교육
울산	농산물 가공식품	**장수**	천연 염료로 우리 옷 만들기
원주	친환경 유기농 재배	**여수**	천연 염색(갓)을 활용한 특산품
춘천	화훼화 교육과정	**장성**	장성 퓨전 한과 생산 · 판매
옥천	야생식용 건강발효식품 개발	**밀양**	친환경 간식 만들기
보은	대추한과, 대추차, 대추비누 등 생산품 개발 및 유통	**아산**	친환경 농법, 천연비누 만들기
남원	제품유통, 마케팅 교육	**전남**	노비떡, 토속주 생산 · 판매
김제	곡물미용제품, 생활용품 만들기		

※ 문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 02)3141-6093

3

엄마가 되신다니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은 이제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처럼 기쁘고 숭고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는 없겠지요.

임신과 건강

임신을 하면 건강에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신을 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7개월까지는 월 1회, 임신 8~9개월에는 2주에 1회, 임신 10개월이 되면 매주 1회씩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월령에 따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신 확인은 어떻게?

- **임신호르몬 검사** :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구입해 소량의 소변을 테스트용기에 떨어뜨리거나 막대를 소변에 담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관계 후 2주가 지나면 임신진단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피검사를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초음파 검사** : 성관계 후 2~2.5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4주 정도 지난 후에는 태아의 심장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혈액검사	일반혈액검사	빈혈,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합니다
	혈액형검사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합니다
	매독검사	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합니다
	간염검사	산모가 간염이 있으면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소변검사		임신중독증, 당뇨병, 요로감염 여부 등을 진단합니다
초음파검사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꼭 주의할 점들

-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습니다.
- 약을 먹을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한 뒤에 복용해야 합니다.
- 술이나 담배는 절대 금지합니다.
- 칼로리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보통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철분은 임신 5개월부터는 별도로 보충을 해주어야 합니다.
- 무리한 중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험요인들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여성결혼이민자가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보건소에 가보세요.

3

- **산전검사**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임신조기진단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 임산부체조교실 • 출산준비교실 • 아기마사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임신 • 태교 • 분만 관련 서적 및 CD, 비디오 등을 대여합니다.
- **철분제 등 지원** 임신 5개월 이상이면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는 필요한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구로서 임신·출산 후 5개월 이내, 수유단계의 여성(12개월까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패키지(6종)를 무료로 지원 _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등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제공 • 무료 영양교육 _1달에 1번 이상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을 함께 (야간이나 주말에도)시행
신청방법	• 접수처 : 보건소 • 필요한 서류 _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_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 등

-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물이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 정신지체 등 장애를 초래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모든 신생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며, 이 질환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검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등 6항목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검사 후 병이 있으면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나 특수조제 분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든 신생아는 출생한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인 가정의 아픈 신생아는 특수조제 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판명되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조제 분유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접수처 : 보건소 • 필요한 서류 : 의사진단서(처음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영수증(특수조제 분유 구입비, 의료비, 약값), 입금계좌통장 사본(처음 신청할 때),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 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으로 인해 신생아 때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미만인 가정의 신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단,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셋째 이상 아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미숙아 : 출생 때 체중에 따라 지원(500~1,000만원)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 선천성이상아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이면 전액, 10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고 지원액은 5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 접수처 : 보건소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한 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보건소 대표 홈페이지 chc.mohw.go.kr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아이를 낳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인가요?

도우미 지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가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결혼이민자는 무료로 출산 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1,853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산전 • 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 기간 : 2주(12일), 쌍둥이(18일)
신청방법	• 접수처 : 거주지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가구원 수 별 소득기준

(천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예방접종

아이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요

예방접종이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성질환 예방 주사제를 아기에게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 시기 및 횟수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대상전염병		백신	접종횟수	시기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		BCG	1회	생후 4주 이내(1회)
	B형간염		HepB	3회	0–1–6개월(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기초 4회 추가 1회	2–4–6개월(3회) 추가 15~18개월 4~6세
			Td	추가 1회	추가 11~12세
	소아마비(폴리오)		IPV	기초 3회 추가 1회	2–4–6개월(3회) 추가 4~6세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MMR	기초 1회 추가 1회	12~15개월(1회) 추가 4~6세
	일본뇌염		(사백신) JEV	기초 3회 추가 2회	12–24개월(2회)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 6세, 12세
	수두		Var	1회	12~15개월(1회)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Flu	6개월~9세미만 2회 이후 매년 1회	6개월 이상
	장티푸스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경구용	3~4회	6세 이상
			주사용	기초 1회 추가 1회	2세 이상
	신증후군출혈열			3회	0개월
기타예방접종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회	2–4–6개월, 12~15개월
	A형간염		HepA	기초 1회 추가 1회 (기초접종 후 6~12개월 후)	1~16세
	폐구균폐렴		PCV	1~4회	2, 4, 6개월 추가 12~15개월

4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시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엄마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제도 및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알아두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교육제도

배움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 **보육시설**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시설
- **유치원** 만 3~5세 유아들이 취학 전에 다니는 교육기관
- **초등학교** 6년 과정으로 만 6세부터 입학 가능
- **중학교** 3년 과정
- **고등학교** 3년 과정, 일반계 · 전문계 · 과학 ·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 **대학교**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3년제인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무료로 제공 · 지원하는 기관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 **이용대상** 저소득층가정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용시간** 주 5일 8시간 이상 이용 가능하며, 지역여건과 센터의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교육 프로그램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등
복지 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연결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 참고_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jckh.org, 지역아동정보센터 www.icareinfo.info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보육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월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가구
(2008년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 398만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시행

국 · 공립 시설에 비해 보육여건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 · 시행합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차등지원 확대

저소득가구의 5세 미만 영유아 보육료와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09년부터는 만 5세의 취학 직전 아동이 있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무상보육 · 교육을 확대합니다.

다자녀 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2009년부터 두 자녀 이상이 교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 · 교육비의 5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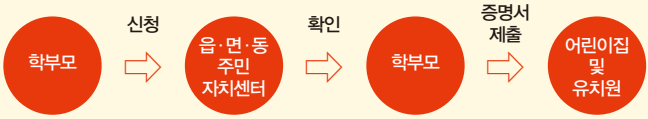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자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신청 방법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이나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영아(만 0~2세)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_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간 부모 보육료 동등 부담

※ '08 국공립시설 보육료 : 0세-372천원, 1세-327천원, 2세-270천원

_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08)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 **유아(만 3~5세)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및 평가를 거쳐 도입 검토**

_지원기준을 갖춘 민간시설은 아동 수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_기본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인하, 교사 보수 수준 이상 등 사용 용도 지정 /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

※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 대전 서구, 경기 평택, 전남 해남

_유아 기본보조금 전면도입 시 가격규제 예외시설 일부 허용 검토

5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어 의료비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내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는 장제비 일부를 지급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

ㅇ 이렇게 가입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장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부부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가입합니다. 가입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 보험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냅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임금의 5.08%(2008년 적용)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각 2.54%)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적용점수에 148.9원(2008년 적용)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지사 (☎1577-1000)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02-3270-9161, 9338, 9835), 홈페이지 : www.nhic.or.kr

의료급여제도(기초의료보장)

생활이 어려운 분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몸이 아픈데 돈이 없으면 너무나 서럽죠?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 질병·부상 및 출산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및 혜택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목적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1종	2종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5%(식비:680원/1식) ※암 등 중증질환자는 10%
외래	1차의료기관 : 1,000원 2차의료기관 : 1,500원 3차의료기관 : 2,000원 CT • MRI • PET : 급여비용의 5%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등은 본인부담금 없음	보건소 : 없음 1차의료기관 : 1,000원 2차, 3차의료기관 : 급여비용의 15% (만성질환자의 2차의료기관 외래진료는 1,000원)
약국	처방전 당 500원	처방전 당 500원

※ 문의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에 있는 환자를 보살펴 드립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기관 인력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를 방문하여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 고위험가족을 우선적으로 관리합니다.
-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족을 중점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노인이 1순위이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은 3순위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해당 여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것을 관리하나요?

- 뇌졸중,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정신질환 등 주요한 건강문제 관리
- 만성질환, 장애, 사고 등 가족의 건강문제 관리
- 임산부 산전관리 및 영유아 성장발달 지도
- 건강교육 및 상담, 판단에 따라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 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관련 부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자 가족의 건강문제 및 방문 필요성 정도 등을 파악합니다.

※ 문의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사회복지담당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보건소 대표 홈페이지 chc.mohw.go.kr)

무료진료

형편이 어려운 분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디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국립의료원,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

어떻게 이용하나요?

-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 등에 이용신청을 합니다.
- 신청할 때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쉼터와 연계되어 무료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으로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임을 관련단체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지원비용

-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
- 1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국립의료원 및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

지역	의료기관 전화번호	지역	의료기관 전화번호
서울	국립의료원 02)2260–7114 서울의료원 02)3430–0201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외국인노동자의원 02)863–9966 시립동부병원 02)920–9114	인천	인천의료원 032)580–6000 인천적십자병원 032)280–2114 인천기독병원 032)762–7831 한림병원 032)540–9114
경기	수원의료원 031)888–0114 의정부의료원 031)828–5000 안성의료원 031)674–7520 이천의료원 031)639–4800 금촌의료원 031)941–5811 포천의료원 031)539–9114	강원	원주의료원 033)761–6911 강릉의료원 033)646–6910 속초의료원 033)632–6821 영월의료원 033)370–9120 삼척의료원 033)572–1141
대전	대전성모병원 042)220–9114 대전선병원 042)220–8000 대전중앙병원 042)670–5114 충남대병원 042)280–7114 을지대학병원 042)611–3000	충남	천안의료원 041)570–7200 공주의료원 041)855–4111 홍성의료원 041)630–6114 서산의료원 041)689–7000 이화여성병원 041)579–1400
충북	청주의료원 043)2790–114 충주의료원 043)841–0114 한국병원 043)222–7000	전북	군산의료원 063)472–5000 남원의료원 063)620–1114 전북대병원 063)250–1114 예수병원 063)230–8114
광주	광주기독병원 062)650–5000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114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114	전남	순천의료원 061)759–9114 강진의료원 061)433–2167 목포의료원 061)260–6500
대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대구적십자병원 053)252–4701	경북	포항의료원 054)247–0551 안동의료원 054)858–8951 김천의료원 054)432–8901 울진의료원 054)785–7018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안동성소병원 054)857–2321
부산	부산의료원 051)507–3000	경남	마산의료원 055)249–1000 진주의료원 055)771–7000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00
제주	제주의료원 064)720–2222 서귀포의료원 064)730–3106		

6 일을 하며 미래의 행복을 가꾸고 싶으세요?

결혼이주여성도 얼마든지 취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업

일자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주변의 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지만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시 · 군 · 구 취업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잡넷(www.jobnet.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잡넷은 여러 취업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정보를 한곳에서 구축한 검색사이트로 구직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워크넷(www.work.go.kr)**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관련 사이트로 직업 및 일자리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이버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무료취업알선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며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지역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지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주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입니다.
-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www.womenwork.or.kr)**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취업 및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시 · 군 · 구 취업정보센터** 지자체에서도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노동부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셔도 취업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술을 배우면 취업이 훨씬 쉬워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술이 없어서 망설여진다고요?
그럼 직업훈련을 받아보세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취업이 한층 쉬워집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

한국국적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은 '전직 실업자 훈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무료이며 식비와 훈련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직업훈련종합정보망(www.hrd.go.kr)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종합정보망 HRD-Net을 통해 알아보시면 직업훈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직업훈련

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직업훈련도 있습니다.

◆ "한국말이 서툴러 답답하다고요?"

그럼 통역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근로계약 등 근로현장에서,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 같은 일상생활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불편하다면 통역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관	전화번호 이용시간	통역이 가능한 언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월~금 09:00~18:00 일 13:00~19:00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영어
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	1577-0177 월~금 09:00~18: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모성을 보호합니다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일용직 포함.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다른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 포함)인 근로자가 해고당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과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인정 여부 통보 →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인정 → 실업급여지급

산전후 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신청서와 산전후(유 · 사산)휴가확인서(사업주 발급) 제출

육아휴직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며,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제출

※ [참고사이트] 노동부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생활이 어려울 때 도와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http://team.mohw.go.kr)을 검색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한국국적취득자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국적이 없고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시 · 군 · 구청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부서에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보장내용

- **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 주거급여를 제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008년도 현금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원/월, 7인 이상은 1인 증가시 187,766원씩 추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기타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

- **주거급여** : 주거를 위한 집을 빌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08년도 주거현금급여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원/월,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00원씩 추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000	12,000	17,000	21,000	25,000	34,000

- **교육급여**(해당자 1인당) : 고등학생은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106,000원), 학용품비(44,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32,000원), 학용품비(44,000원) 지원
- **해산급여** : 출산비용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40만원~50만원
- **기타급여** : 자활급여, 의료급여

※ 문의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활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기술, 자금 등의 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요건

소득인정액(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층 이하이며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의 종류

- **시장진입형**(기술 및 자격증 소지자) :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창업이 쉬운 업종에서 근로하며 독립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 : 세차, 도배 등)
- **인턴형**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 : 이미용, 제과 · 제빵 등)
- **사회적 일자리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며 자활능력을 키워 시장진입 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 간병, 세탁 등)
-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약한 업종으로 관내 사업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근로조건

근로의 종류에 따라 주당 4~5일, 1일 5~8시간 근무를 하며,
임금(일당 2만원~3만1천원)과 참여기간(6~12개월)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역자활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등과 상담을 거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02-324-1892~3, www.jahwal.or.kr)

긴급지원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남편의 사망, 가출, 구속, 부상, 화재,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가정에 위기가 닥쳐 생계가 곤란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신속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요건

임신 중이거나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생계곤란 시 기본 1개월~최대 4개월 간 현금 또는 현물 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 1인 증가 시마다 189,140원씩 증가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1회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거소가 필요한 자에게 기본 1개월 ~ 최대 4개월 간 주거비임대료 또는 보호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
- **기타지원** : 긴급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 · 장례비용 (각 50만원), 난방비(10월 ~ 3월, 6만원 현물지원), 연체전기료(50만원)지원 등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절차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 시 · 군 · 구로 연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적정성 심사 후 지원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환수합니다.

※ 문의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모자복지 지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편 없이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금전적인 지원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요건

한국국적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라도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집이 없는 경우 시설보호**(보호기간/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3년/2년)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준비가 부족한 모자가정(3년/2년)
  모자임시보호시설 : 남편의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받는 모자가정(6개월/3개월)
- **재가보호**(복지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만 6세 미만, 월 5만원) /
  복지자금 대여(2천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 장기저리)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한 뒤 결정사항 및 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다른 복지지원제도와 중복하여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수급자 기준 (원/월)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차상위소득기준	555,656	941,138	1,231,924	1,519,018	1,785,454	2,054,623

※ 차상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알아두면 요긴한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표열람 · 발급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면제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및 하수도기본량 면제(서울시의 경우)
- 종량제폐기물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 가입비 · 이전비 · 월 기본료 · 114안내료 면제, 통화료(150도수/월)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1만원 범위/월)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인터넷접속료 30% 감면)
- 전화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월 감면(지역별로 상이(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전기요금 20% 할인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복지서비스 : 보육, 장애인복지, 아동, 청소년, 모자복지 등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응급의료 등

의료 : 장례, 암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의료분쟁, 예방접종 등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안전하게 지켜 드립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그 웃음과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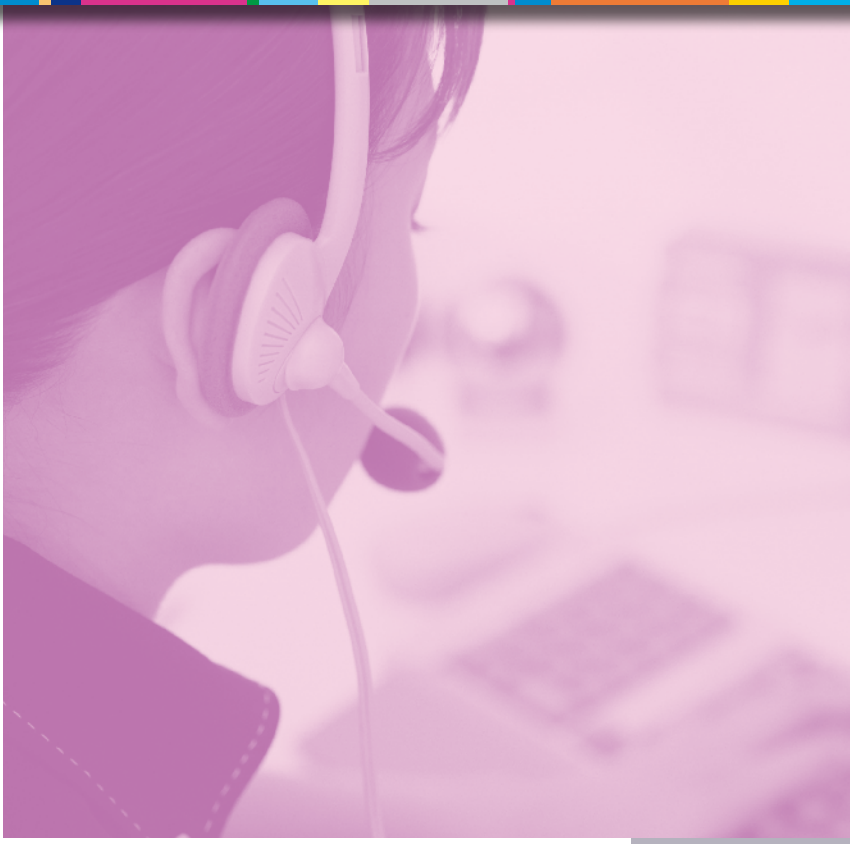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인격모독, 가족 간의 갈등, 차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ONE-STOP시스템을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577-1366에 전화를 하시면

- 전문상담원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8개국 언어로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인격모독 · 가족 간의 갈등 · 차별 ·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안전한 긴급피난시설 또는 보호시설과 연계해 도움을 드리고, 긴급 상황에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료 · 법률 · 수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홈페이지(www.wm1366.org)를 통한 사이버 상담, 이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 1253 동보빌딩 306호

이주여성인권센터(www.wmigrant.org)를 아시나요?

외국인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합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피해, 다문화가정문제 상담 · 심리치료 · 의료지원 · 법률지원
◆임신출산교육 · 육아지도 · 산전산후 돌봄 · 신생아용품 지원
◆신체 · 정신 · 성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여성, 임산부 등에게 쉼터 제공
◆한글교육 · 컴퓨터교육 · 문화체험행사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상담가능외국어 :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키즈스탄어, 태국어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68 4층 전화 : 02)3672-8988 팩스 : 02)3672-8990

알아두면 생활이 편리해져요

생활과 관련된 기관 홈페이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체류 국적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취업 직업훈련 근로	잡넷	www.jobnet.go.kr
	노동부종합상담센터	www.job.go.kr
	워크넷	www.work.go.kr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jobcenter.go.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work.go.kr
	직업훈련종합정보망	www.hrd.go.kr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www.womenwork.or.kr
	고용보험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생활보장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team.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www.jahwal.or.kr
인권보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www.wm1366.org
	이주여성인권센터	www.wmigrant.org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가족모니터링단 온라인카페	cafe.daum.net/tmfcenter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tmfc.familynet.or.kr

여성폭력 ONE-STOP지원센터

가정 ·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 통합지원네트워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	전화번호	지역	의료기관	전화번호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90-114
부산	부산의료원	051)507-3000	충남	충남대병원	042)280-7114
대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전북	전북대병원	063)250-1114
인천	인천의료원	032)580-6000	전남	조선대병원	062)220-3114
울산	동강병원	052)241-1114	경북	안동의료원	054)858-8951
경기	아주대병원	1688-6114	경남	마산의료원	055)249-1000
	의정부의료원	031)828-5000	제주	한라병원	064)740-5000
강원	강원대병원	033)258-2000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드립니다

지원기관	전화번호	긴급상황	전화번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577–543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범죄신고	112
국민건강보험상담	1577–1000	화재 • 구급 • 구조신고	119
노동부고용지원센터	1588–1919	성매매 • 학교폭력	117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학대	139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응급질병상담 • 병원안내	1339
국민건강보험상담 (외국인전용)	02)3270–9161 02)3270–9338	통역서비스	1644 – 0644 1577–0177

주한 대사관

국명	전화번호	주소
방글라데시	02)796–405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캄보디아	02)3785–104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34
중국	02)738–1038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4
에콰도르	02)739–2401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인도네시아	02)783–56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일본	02)2170–5200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카자흐스탄	02)391–8906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1–5
말레이시아	02)795–920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1
몽골	02)798–346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5
미얀마	02)790–38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파키스탄	02)796–825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4–13
러시아	02)318–2116	서울 중구 정동 34–16
스리랑카	02)735–2966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2호
태국	02)795–309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우크라이나	02)790–569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7
우즈베키스탄	02)574–655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베트남	02)739–2065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당신은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며느리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귀한 보배입니다.
당신이 설계한 삶에 아름다움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1577-5432)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직업교육, 각종 상담, 자녀양육지원, 출산전후 교육 및 도우미(출산 · 육아 · 가사)지원,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